

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2919
------	------

2021. 12. 1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10월 15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20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】

- 제14차 기획경제위원회 (2021.12.1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기획조정실장 김의승)

1. 제안이유

가.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,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·지방분권·지방행정·지방재정 등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함.

나. 이에 중앙정부 및 17개 시도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으므로,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,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사무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

나.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 제3조제3항

제3조(출연금)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추진 필요성

-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·지방분권·지방행정·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,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

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 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안에 대해 지역 연구원과 차별화된 조사·분석을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함

-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에 따라, 중앙 정부 및 각 17개 시·도가 출연금을 분담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기여함

다. 출연 사무내용

- 1)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
- 2) 지방행정·지방재정·지역발전의 당면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
- 3) 지방투자사업 (예비)타당성 조사·평가 연구 및 용역수탁
- 4)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등
- 5) 국내외 연구기관과 교류, 협력

라. 출연 기관 개요

- 1) 연 혁
 - 1984. 09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립(서울시 마포구)
 - 1986. 05 :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 제정
 - 2015. 10 :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」 개정 (출연금 지급 지자체에 특별시 포함) 및 서울특별시 출연 시작
 - 2016. 12 :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
- 2) 소재지 :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(반곡동)

3) 규 모

- 조 직 : 원장, 부원장, 6실, 1센터, 1본부, 5실, 3부
- ▶ 기획조정실, 자치분권제도실, 자치행정혁신실, 지방재정실, 지역포용발전실, 경영지원실,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

- 인 력

- ▶ 이 사 : 총 28명 (당연직 21명, 임의직 7명)

이사회 구성 현황 (총 28인)

- 원 장 :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
- 당연직(21)
 - 행안부(4) :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, 자치분권정책관, 지방재정정책관, 지역발전정책관
 - 시·도 기획관리실장(17) :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,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
- 임의직(7) : 김순은(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), 김재훈(서울과기대), 손희준(청주대), 이재원(부경대), 강현수(국토연구원장), 김태영(경희대), 이원희(한경대)

※ 당연직 이사 : 행정안전부 4, 각 시·도 기획조정실장 17

- ▶ 직 원 : 총 77명 (임원 1, 연구직 45, 관리직 16, 전문직 1, 투자분석직 14)

(2021. 7월말 현재, 단위:명)

구분	계	원장	연구직	관리직	전문직	투자분석직
정원	102	1	63	18	2	18
현원	77	1	45	16	1	14
과부족	△25	-	△18	△2	△1	△4

4) 지원시설

- 규 모 : 청사 건물 지상 3층, 지하 2층 / 연면적 5,742.68m²
- 건축년도 : 2016년(2016. 12월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)
- 시설현황

층 별	주요 용도
지하 2층	주차장, 체력단련실, 기계실, 전기실
지하 1층	자료실
1층	로비, 행정국, 연구기획실
2층	임원실, 지방재정연구실, 대회의실, 중회의실, 소회의실
3층	자치행정연구실, 지역발전연구실, 중회의실, 소회의실, 여성휴게소

마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1) 2022년 출연금 편성액(안) : 2억 5천만원

2) 산출근거

- 지방자치단체(17개) 출연금 총 41억 5천만원

▶ 특별·광역시·도(16개) 출연금: 각 2억 5천만원

▶ 세종특별자치시(1개) 출연금: 1억 5천만원

※ 분담근거 :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 제3조(출연금) 및
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출연금의 교부절차 등)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에 서울시 출연금을 반영하기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서울시장회의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나.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현황 및 출연경위

- 산업화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·체계적인 조사·연구가 필요함에 따라, 1984년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(재)지방행정연구소가 설립되었음.
-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(이하 '연구원')으로 변경되고(1986.2),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(1986.5)이 제정·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의무가 법정화되었음.
- 현재 연구원은 연구직 45명을 포함한 77명(정원 102명)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▶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▶ 지방행정·재정 및 지역발전 조사연구 ▶ 지방투자사업 (예비)타당성 조사·평가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.

- 연구원의 세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, 17개 시·도의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을 정하고 있음.
-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와 같은 41억 5천만원으로,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각 2억 5천만원씩, 세종특별자치시가 1억 5천만원을 출연하게 됨.

< 최근 5년간 출연금 현황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7	2018	2019	2020	2021
정 부	2,129	2,329	2,854	2,854	2,854
지방자치단체	3,300	3,300	4,150	4,150	4,150

- 연구원의 2021년 일반회계 예산은 108억원 규모로, 정부출연금 28억 5천 4백만원(27%), 지자체 출연금 41억 5천만원(39%), 그 외 수탁 연구용역·기금이자 등 자체수입 24억원(22%), 이월금 13억원(12%)으로 구성됨.

< 2021년 세입·세출 예산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세 입			세 출		
	2021	2020	증감	2021	2020	증감
일반회계	10,789	11,821	△1,032	10,789	11,821	△1,032
지방투자사업 특별회계	10,865	13,808	△2,943	10,865	13,808	△2,943
기금회계	30,359	30,507	△148	30,359	30,507	△148
총당금회계	7,996	2,828	5,168	7,996	2,828	5,168

다. 출연의 적정성 여부

-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(이하 ‘법’)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(제3조제3항)¹⁾.
-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, 연구원은 출연의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‘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’와 ‘추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’, 기타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출연금요구서를 제출해야 함.²⁾
- 하지만, 서울시에 제출한 출연금요구서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서울시 출연금 2억 5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만 기재되어 있어 연구원의 전체 예산 규모와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음.
- 이는 법 시행령에 관련 서류제출 기한이 10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어 예산안 제출 전에 의회 출연동의를 받도록 한 「지방재정법」의 규정과 상치하는 입법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임.
- 따라서 시의회 출연동의안 제출시기에 맞춰 출연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관련 서류 제출시기를 8월 말로 조정하는 입법보완이 요구됨.

1)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 제3조(출연금)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2)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」 제3조(출연금의 교부절차등) ① 연구원은 매년 10월31일 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

2.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

3.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

< 서울시 출연금 산출내역 >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2년		
	예산액	산출기초	
합계	250,000		
인건비 소계	189,000	(75.6%)	
연봉	189,000	• 연구원 총액인건비(63억원) 3%	
연구사업비 소계	40,000	(16.0%)	
연구 사업 비	정책연구과제	10,000	• 정책연구 개발사업 등
	시도현안과제	8,000	• 현안과제 개발사업 등
	학술행사 등	12,000	• 국·내외 세미나, 지방의정아카데미, 자치분권과 사회혁신 포럼,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지원 등
	발간사업 등	10,000	• 지방행정연구, 지방자치이슈와포럼, 지방자치정책브리프, 지방의정브리프 등
일반운영비 소계	21,000	(8.4%)	
일반운영비	21,000	• 일반수용비, 공공요금, 보험료 시설 및 청사관리비 등	

○ 한편,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 서울시 출연의무가 법정화된 이후, 연구원은 출연금 분담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가 요청하는 분야의 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있음.

- 출연금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정책과제 1건과 현안 이슈 대응 리포트 1건(2018년부터 시작)을 지원하고 있음.

< 최근 3년간 서울시 정책과제 수행 현황 >

구분	연구과제명	부서
2019	지방소비세 인상과 연계한 지자체의 재정확충효과 분석	재정균형발전담당관
2020	재정분석지표를 활용한 시·산하기관 통합적인 재정관리 추진	재정균형발전담당관
2021	서울교통공사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	도시철도과

< 최근 3년간 서울시 현안이슈 리포트 지원 현황 >

구분	연구과제명	부서
2019	승용차요일제에서 마일리지 제도로의 통합 및 활성화 방안	에너지시민협력과
2020	소방직 국가직화 인건비 지방자치단체 부담 개선 연구	재정균형발전담당관
2021	동주민센터 기능 개편(역할 정립) 방안 연구	자치행정과

- 자치분권2.0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정부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연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.
- 다만, 제302회 임시회에 제출한 출연동의안이 법에서 정한 제출 서류 미비와 서울시 협력연구 부실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바 있으며 이후에도 관련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음.
- 이에 연구원의 추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법정 기한에 맞춰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, 서울시의 행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협력연구 발굴이 요구됨.
- 한편, 출연금 분담비율이 2015년 이후 정부 출연금은 35% 증가한 반면, 지방정부 출연금은 97% 큰 폭으로 증가해 정부 간 불균형한 출연 비율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91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10월 1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,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·지방분권·지방행정·지방재정 등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.
- 나. 이에 중앙정부 및 17개 시도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으므로, 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,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출연 사무명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
- 나.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

제3조(출연금)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-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추진 필요성

-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·지방분권·지방행정·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,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 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안에 대해 지역 연구원과 차별화된 조사·분석을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함
-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, 중앙 정부 및 각 17개 시도가 출연금을 분담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기여함

다. 출연 사무내용

- 1)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
- 2) 지방행정·지방재정·지역발전의 당면현안에 대한 조사연구
- 3) 지방투자사업 (예비)타당성 조사·평가 연구 및 용역수탁
- 4)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등
- 5) 국내외 연구기관과 교류, 협력

라. 출연 기관 개요

1) 연 혁

- '84. 9월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립(서울시 마포구)
- '86. 5월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정
- '15.10월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개정(출연금 지급 지자체에 특별시 포함) 및 서울특별시 출연 시작
- '16.12월: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

2) 소재지: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(반곡동)

3) 위치도



4) 규모

- 조 직: 원장, 부원장, 6실, 1센터,

- ▶ 기획조정실, 자치분권제도실, 자치행정혁신실, 지방재정실, 지역
포용발전실, 경영지원실,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

- 인 력

- ▶ 이 사 : 총 28명 (당연직 21명, 임의직 7명)

이사회 구성현황 (총 28인)

- 원 장 :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
- 당연직(21)
 - 행안부(4) :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, 자치분권정책관, 지방재정정책관, 지역발전정책관
 - 시·도 기획관리실장(17) :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, 경기,
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
- 임의직(7) : 김순은(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), 김재훈(서울과기대), 손희준(청주대),
이재원(부경대), 강현수(국토연구원장), 김태영(경희대), 이원희(한경대)

※ 당연직 이사 : 행정안전부 4, 각 시·도 기획조정실장 17

▶ 직 원 : 총 77명 (임원 1, 연구직 45, 관리직 16, 전문직 1, 투자분석직 14)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원장	연구직	관리직	전문직	투자분석직
정 원	102	1	63	18	2	18
현 원	77	1	45	16	1	14
과부족	△25	-	△18	△2	△1	△4

5) 지원시설

- 규 모 : 청사 건물 지상 3층, 지하 2층 / 연면적 5,742.68m²
- 건축년도 : 2016년('16.12월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)
- 시설현황

층 별	주요 용도
지하 2층	주차장, 체력단련실, 기계실, 전기실
지하 1층	자료실
1층	로비, 행정국, 연구기획실
2층	임원실, 지방재정연구실, 대회의실, 중회의실, 소회의실
3층	자치행정연구실, 지역발전연구실, 중회의실, 소회의실, 여성휴게소

마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1) '22년 출연금 편성액(안) : 250백만원

2) 산출근거

- 지방자치단체(17개) 출연금 총 4,150백만원

▶ 특별·광역시·도(16개) 출연금: 각 250백만원

▶ 세종특별자치시(1개) 출연금: 150백만원

※ 분담근거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(출연금) 및 동법 시행령 제3조
(출연금의 교부절차 등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

제3조(출연금)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2)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조직담당관 시정연구팀 송인명 (☎ 2133-6747)